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시 보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의장

제 47 호 2015. 5. 8(금)

조 례

-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1
- 남원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5
- 남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9
-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18
-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28
-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34

규 칙

- 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41

공 고

-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급여) 압류 통지서 공고.....54

회 람										
--------	--	--	--	--	--	--	--	--	--	--

※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9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5월 8일

남원시 조례 제 1159 호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제28조의 제목 “(법령 등 위반 또는 사정변경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을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반 하거나 사정에 따른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을 “위반한”으로, “취소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을 “취소”로 한다.

제29조 제2항 중 “한다”를 “하고, 근저당권의 설정은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 등기 또는 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남원시 지방재정공시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② (생략)</p> <p>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 관련 예산 편성은 <u>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u>에 따른다.</p> <p>④ (생략)</p> <p>제9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7. (생략)</p> <p><u><신 설></u></p> <p>② (생략)</p> <p>제28조(<u>법령 등 위반 또는 사정변경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u>)</p> <p>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 등을 <u>위반하거나 사정에 따른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에는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u>취소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u>할 수 있다.</p>	<p>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행정자치부장관</u>----- -----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9조(위원회 기능) ①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시</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8조(<u>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u>) ① ----- ----- ----- <u>위반한</u>----- ----- ----- <u>취소</u>----- -----.</p>

② ~ ⑦ (생략)
제29조(재산의 관리)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근저당권의 설정기간은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은 등기일부터 10년간, 그 밖의 동산은 등록일부터 5년간으로 한다.

③ (생략)
제31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9조(재산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하고, 근저당권의 설정은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건물표시 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

----- 행정자치부장관-----
-----.

② -----
----- 행정자치부장관-----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5월 8일

남원시 조례 제 1160 호

남원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교류활동 확대 및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 교류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시민과 관내 기업인의 실익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도시 간 우호교류를 통해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상호간 교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을 체결한 경우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자매결연, 우호교류 대상 및 기준) 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국내·외 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의 수는 제한하지 아니하며, 시의 재정여건과 교류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정한다.

제6조(사전검토) 남원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하여 얻게 되는 실질적인 이익의 기대성
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제7조(사전교류)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할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한다.

② 자료 및 의견교환 시에는 양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지역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8조(의회 동의)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변경 및 취소하는

경우 남원시의회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 체결) 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은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서명하여 체결한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합의·서명하고 합의문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상호 방문 시 경비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교류 협력지원)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노력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맺은 국내·외 도시 상호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민·각급기관·학교·기업·사회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외도시 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등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자치단체 관계자가 우리시를 방문할 경우 상호 수혜 및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 2.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 3.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상호 교류 추진 등과 관련된 모든 기록 및 관계서류는 10년 이상 보존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와 관련되는 동의서, 조인서, 협정서, 공동선언문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추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정리하여 계속 유지·관리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협정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5월 8일

남원시 조례 제 1161 호

남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를 “남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 하는”을 “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로, “기초 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노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데”를 “노인에게 수당 지급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상”을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표상 만”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장수수당”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를 ““장수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이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만85세”를 “만 85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라도 그 급여액이 이 조례의 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는 차액만큼의 금액을 보충하여 지급한다.

제4조 본문 중 “읍면동장”을 “읍·면·동장”으로, “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하고”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급대상자를 조사하고”로, “의하여 시장”을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신규·추가 발생시에는 수시 조사후”를 “신규·추가 발생 시에는 수시 조사하여”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급기준) 수당은 월 3만원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장수수당의”를 “수당”으로, “지급대상자 명의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입금함을”을 “지급대상자 명의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입금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7조의 지급중지 사유 발생 시는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국외이주 또는 장기출타 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그 밖에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 되었을 경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관리대장 비치) 읍·면·동장은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조사내역(제4조 관련)

연번	주소	성명	생년월일	지급계좌		거주여부	
				예금주	계좌번호	여	부

[별지 제2호서식]

년 월분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명단(제4조 관련)

연번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지급액 (원)	지급계좌		비고
					예금주	계좌번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남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u>경로효친</u> 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u>기초노령연금</u>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u>장수 노인</u>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는 다음과 같다.</p> <p>1. “<u>장수노인</u>”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85세 이상인 <u>자</u>를 말한다.</p> <p>2. “<u>장수수당</u>”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적 금전을 말한다.</p> <p>제3조(지급대상자) ① 이 조례에 의한 수당 지급대상자는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수 노인으로서 하며, <u>만85세</u>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p> <p>② <u>기초노령연금</u> 수급대상자라</p>	<p style="text-align: center;"><u>남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u></p> <p>제1조(목적) ----- ---- <u>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u> ----- ----- <u>기초연금</u> ----- ----- <u>노인에</u> <u>게 수당 지급에</u> ----- ----- -----.</p> <p>제2조(정의) ----- ----- <u>뜻은</u> -----.</p> <p>1. “<u>장수노인</u>”이란 주민등록표상 <u>만</u> ----- <u>사람을</u> -----.</p> <p>2. “<u>장수수당</u>”(이하 “<u>수당</u>”이라 한다)이란 이 조례에 따라 ----- -----.</p> <p>제3조(지급대상자) ① ----- <u>따른</u> ----- ----- ----- <u>만 85세</u>----- -----.</p> <p>② <u>기초연금</u> 수급대상자라도 그</p>

할 지라도 그 급여액이 본 조례의 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의 금액을 보전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대상자의 조사) 읍면동장은 매월 15일까지 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추가 발생시에는 수시 조사후 제출한다.

제5조(지급기준) ① 장수수당의 지급액은 월 30,000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지급기준일은 만8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제6조(지급방법) ① 장수수당의 지급은 매월 30일까지 지급대상자 명의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리인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② 제7조의 규정에 대한 지급중지 사유 발생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급여액이 이 조례의 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의 금액을 보충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대상자의 조사) 읍·면·동장-----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급대상자를 조사하고-----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신규·추가 발생 시에는 수시 조사하여 -----.

제5조(지급기준) 수당은 월 3만원으로 한다.

제6조(지급방법) ① 수당----- 지급대상자 명의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입금을 -----

② 제7조의 지급중지 사유 발생시는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납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 2. 수급권자가 국외이주 또는 장기출타 한 때
- 3. 수급권자가 수령을 거부할 때
- 4. 기타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 되었을 때

② 제1항제4호의 경우 읍면동장은 지급한 전액을 지체없이 적절한 방법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대장 비치) 읍면동장은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지급 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시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
- 2. 지급대상자가 국외이주 또는 장기출타 한 경우
- 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4. 그 밖에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 되었을 경우

제8조(관리대장 비치) 읍·면·동

장은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 시행에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5월 8일

남원시 조례 제 1162 호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를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로 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등록표에 의하여”를 “주민등록표에”로, “세
목에 대하여”를 “세목에”로, “포함한다)에 대하여”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부에”를 “여부에도”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으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2016년 1
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
분의 75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

된 부동산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을 “경우는 제외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수산물가공품”을 “농산물가공품”으로 하며,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하려는 자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공단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을 “농공단지에 대체입주 하는 자(휴업·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 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취득하는 해당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정한다)에 대하여”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부동산에 대하여는”을 “부동산은”으로, “5년 동안”을 “5년간”으로, “3년 동안”을 “3년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부동산에 대하여는”을 “부동산은”으로, “5년 동안”을 “5년간”으로, “3년 동안”을 “3년간”으로 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13조 중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를 “같은 과세대상의 지방세를 감면할 경우”로 한다.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받은”을

“받을”로 한다.

제15조 중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7조”로 한다.

제16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7월 2일 이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조례 제922호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제7조에 따른다.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
 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
 차를 말소등록 하거나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
 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 4.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여
 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
 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 4. (생략)

제3조(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
 면)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
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
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
다)를 면제하며,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
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세목에-----

----- 포함한다)-----

-----.

1. ~ 4. (현행과 같음)

② ----- 여부
에도 -----

-----.

1. ~ 4. (현행과 같음)

제3조(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
 면)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
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 (2017
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
일까지는 100분의 50)를 경감한
다.

3.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단체 및 법인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분의 50을 경감한다.

- 1. 인월농공단지
- 2. 광치 제1농공단지
- 3. 광치 제2농공단지
- 4. 어현 농공단지
- 5. 노암 제1농공단지
- 6. 노암 제2농공단지

제8조(신발전지역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 농공단지에 대체입주 하는 자(휴업·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 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취득하는 해당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은-

-----.

1. ~ 6. <삭 제>

제8조(신발전지역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

하기 위한 투자(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1에 따른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산세를 감면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4호에 따른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③ (생략)

제9조(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

 ----- 한정한다 -----

 -----.

1. -----

 ----- 부동산은 -----

 ----- 5년간 -----

 ----- 3년간 -----
 -----.

2. -----

 ----- 부동산은 -----

 ----- 5년간 -----

 ----- 3년간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

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의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② ~ ④ (생략)

제1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를 적용한다.

제14조(감면 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

한 세액공제) ① -----

-----.

1. ----- 따른 -----

2. -----
----- 따른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중복감면의 배제) 같은 과세대상의 지방세를 감면할 경우 -----

-----.

제14조(감면 신청 등) ① -----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

-----.

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은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4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② -----
받을 -----

-----.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7조-----

-----.

제16조(시행규칙) ----- 시행
에-----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5월 8일

남원시 조례 제 1163 호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하기 위하여 남원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위하여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세입)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선수금
- 2. 기채전입금
- 3. 보조금

- 4. 분양지 매각대금
- 5. 부지임대료
- 6. 일반회계 전입금
- 7. 그 밖에 수입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토지매입비
- 2. 지장물보상비
- 3. 공업용지공사비
- 4. 부대시설비
- 5. 기채상환금
- 6. 그 밖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의 제목 “(예산의 이월)”을 “(세출예산의 이월)”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부대경비

-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서 정하는 경비
- 3.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서 정하는 경비
-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삭 제>

제7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남원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위하여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 ----- ---</p>
<p>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전입금, 보조금 분양지 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p>	<p>제2조(세입)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선수금</u> 2. <u>기채전입금</u> 3. <u>보조금</u> 4. <u>분양지 매각대금</u> 5. <u>부지임대료</u> 6. <u>일반회계 전입금</u> 7. <u>그 밖에 수입</u>
<p>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지장물보상비, 공업용지공사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기타 농공지구 조성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p>	<p>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토지매입비</u> 2. <u>지장물보상비</u> 3. <u>공업용지공사비</u> 4. <u>부대시설비</u>

제4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당해년도 사업비로 사업을 완공치 못하는 경우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5. 기채상환금

6. 그 밖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 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경비

<신 설>

<신 설>

제5조(회계간 전용) 특별회계는 사업조성기간중 재정이 어려워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일시 전용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삭 제>

제7조(시행규칙) ----- 시행에-----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5월 8일

남원시 조례 제 1164 호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이내”를 “이하”로, “남원시장”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호선하고”를 “호선(互選)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전주보훈지청장

제2조 제3항 후단 중 “제9호까지”를 “제10호까지”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를 “한차례 소집하며”로 한다.

제4조 제2호가목 중 “차량, 선박”을 “차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사기 양양 및 민·관·군”을 “사기를 드높이는 사항 및 민·관·군”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협의회의 통합운영)”을 “(협의회의 통합·운영)”으로 한다.

제6조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작전담당간사 : 육군 제7733부대 3대대 작전장교

4. 예비군담당간사 : 육군 제7733부대 3대대 동원장교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장”을 “의장”으로,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포함한”을 “포함하여”로, “이내”를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3명 이하로”를 “3명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남원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u>등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등에</u>----- ----- --.</p>
<p>제2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의장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u>이내</u>로 구성하되, 의장은 <u>남원시장</u>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u>호선하고</u>,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p>	<p>제2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 ----- ----- <u>이</u> <u>하</u>----- <u>남원시장</u> <u>(이하 “시장” 이라 한다)</u>----- ----- <u>호선(互選)</u> <u>하고</u>----- ----- -.</p>
<p>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p>	<p>② ----- -----.</p>
<p>1. ~ 9. (생략) <u><신설></u> 10. (생략)</p>	<p>1. ~ 9. (현행과 같음) 10. <u>전주보훈지청장</u> 11. (현행 제10호와 같음)</p>
<p>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u>제9호까지</u>에 해당</p>	<p>③ ----- ----- <u>제10호까지</u>-----</p>

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회의 소집 및 의결) ①
협의회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
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
마다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
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생략)

제4조(협의회회의 심의사항) 협의
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 1. (생략)
-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
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
원 대책

나.·다. (생략)

-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용 및 지원 대책

가. (생략)

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
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
원에 대한 사기 양양 및 민
·관·군 간의 유대 강화
에 관한 사항

--.

제3조(협의회회의 소집 및 의결) ①

----- 한차
례 소집하며-----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협의회회의 심의사항) -----

--.

- 1. (현행과 같음)
- 2. -----
-

가.----- 차량-----

나.·다. (현행과 같음)

- 3. -----

가. (현행과 같음)

나.-----

- 사기를 드높이는 사항
및 민·관·군-----

4.·5. (생략)

제5조(협회의의 통합운영) (생략)

제6조(간사) 협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1. (생략)
- 2. 작전담당간사 : 3대대 작전장교
- 3. (생략)
- 4. 예비군담당간사 : 3대대 동원장교

제7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협회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회의에 남원시 통합방위실무협회의를 두며 회장은 민방위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협회의의 간사가 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 1. ~ 3. (생략)
- ② (생략)

제8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읍·면·동장 소속으로 각각 통합방위 지원본부

4.·5. (현행과 같음)

제5조(협회의의 통합·운영) (현행과 같음)

제6조(간사) -----

-----.

- 1. (현행과 같음)
- 2. 작전담당간사 : 육군 제7733부대 3대대 작전장교
- 3. (현행과 같음)
- 4. 예비군담당간사 : 육군 제7733부대 3대대 동원장교

제7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

----- 의장-----
----- 다음 각 호와 -----.

- 1. ~ 3.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시장-----

(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③ (생략)

④ 시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
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
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
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
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
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
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
함한 4명 이상 9명 이내의 반원
으로 구성하고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장
또는 관련업무담당주사로 한
다.

⑤ 읍·면·동 지원본부 지원반
은 총괄지원반(보급·재정·홍
보 포함), 동원지원반, 통신·
의료·구호지원반의 분야로 구
성하되 자체 실정에 맞게 2~3
개 반을 운영하고 반원은 2명
또는 3명 이하로 편성한다.

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0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그 밖의 협의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포함

하여 ----- 이하-----

⑤ -----

----- 3명으로 -----.

⑥ ----- 운
영에-----
-----.

제10조(운영세칙) ① -----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② (생략)

-- 등에-----

② (현행과 같음)

남원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5년 5월 8일

남원시 규칙 제 550 호

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의 시행에 관하여”를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제2조 중 “「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이하”를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로, “신설급수공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조례 별지 제1호 서식과”를 “신설 급수공사 승인을 받을 때에는 조례 별지 제1호서식과”로, “신고필증”을 “신고확인증”으로 한다.

제3조 중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읍면동별”을 “읍·면·동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의”를

“임의로”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기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란 조례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란 조례 제39조제1항에 따른”으로, “없을 때”를 “없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때에 는 체납액을 정산하게 한”을 “경우에는 체납액을 정산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 4항 본문 중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7조 중 “급수설비에 대하여”를 “급수설비에”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입회하”를 “참관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제7조 규정”을 “제7조”로, “각각 따로”를 “각각”으로 한다.

제9조 중 “의거”를 “따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급수업종 변경보고서에 의하여”를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업종 변경보고서에 따라”로 한다.

제10조 제3항제1호 본문 중 “탈락·동파로 인한”을 “탈락·동파로”로, “계량기에 대하여”를 “계량기”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사고로 인 하여”를 “사고로”로, “아니하”를 “아니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지중 매물·망실·장애물”을 “장애물”로, “봉쇄”를 “봉쇄·땅속으로 파묻히거나 잃 어버릴 경우”로, “계량기에 대하여”를 “계량기”로, “명기”를 “정확하게 기록”으 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사고로 인하여”를 “사고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8조 규정”을 “제28조”로, “이상시험”을 “이상 시험”으로, “제3항 규정”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9조의 규정”을 “제39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가정용에 있어서는”을 “가정용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동일규모”를 “같은규모”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다만, 시”를 “다만,

남원시”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시장”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량기에 대한”을 “계량기”로, “해당하는 때”를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13조 중 “제31조 규정”을 “제31조”로 한다.

제15조 제1항 전단 중 “누수량에 대하여”를 “누수량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누수량에 대해서는”을 “누수량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별지 제4호 서식)”를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36조제7호”를 “제36조제6호”로 한다.

제16조 제1항 중 “제18조 규정”을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판단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의거 별지 제3호 서식”을 “따라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삭 제>

제17조 제2항 중 “부정급수전에 대해서는”을 “부정급수전은”으로, “부과함파”를 “부과와”로, “부정급수사용자”를 “위반자”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u>」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신설 급수공사의 신청) 「<u>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u>」(이하 “<u>조례</u>”라 한다) 제6조에 따라 <u>신설급수공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조례 별지 제1호 서식과</u>,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물대장(임시건축물의 경우 가설건축물 <u>신고필증 사본</u> 또는 시설을 인정할 수 있는 확인서)을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조(공사비 납부) <u>조례 제13조 제2항의</u> 규정에 의한 공사비 납부기일은 급수공사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p> <p>제4조(수전번호) ① 급수설비가 신설되었을 때에는 <u>읍면동별 고유번호</u>에 등재순위 번호를 해당</p>	<p style="text-align: center;"><u>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u> <u>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 규칙은 「<u>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u>」의 시행에----- -----.</p> <p>제2조(신설 급수공사의 신청) 「<u>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u>」(이하 ----- ---- <u>신설 급수공사 승인을 받</u> <u>을 때에는 조례 별지 제1호서식</u> <u>과</u>----- ----- <u>신고확인증</u> ----- ----- -----.</p> <p>제3조(공사비 납부) ---- <u>제13조 제2항에 따른</u>----- ----- -----.</p> <p>제4조(수전번호) ① ----- ----- <u>읍·면·동별</u> -----</p>

수전번호로 하고 남원시 수도요금관리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수전번호는 일제 정비시나 검침순위 재정비 등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임의 변경할 수 없다.

제5조(급수 중지와 폐전신청) ① 조례 제22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서 “기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란 조례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하고도 개선신청이 없을 때를 말한다.

② 급수사용자의 폐전신청에 의하여 급수장치를 철거할 때에는 체납액을 정산하게 한 후 처리한다.

③ (생략)

④ 폐전 또는 급수 중지 계량기의 급수사용료 조정은 조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급수(개선·폐전·중지) 신청서 접수일로 조정하되 조정과 동시에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

② -----

----- 임의로 -----
-----.

제5조(급수 중지와 폐전신청) ① -----
-----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란 조례 제39조제1항에 따른-----

----- 없는 경우-----.

② ----- 따라----- 경우에는 체납액을 정산한-----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별
지 제3호서식에 따른-----

-----.

만, 조정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분으로 조정한다.

제6조(개선신청) ①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조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개선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7조(구경별 정액요금) 조례 제24조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사용수량에 관계없이 소화용 급수설비와 급수사용자가 설치한 계량기를 제외한 모든 급수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계량기 검침) ① 급수전의 계량기를 검침할 때에는 가급적 수용가의 입회하에 계량기 검침 정례일에 실시하고, 전산시스템에 검침일자·지침수·사용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사용량 검침은 주계량기로 한다. 다만,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

-----.

제6조(개선신청) ① -----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구경별 정액요금) -----

----- 급수설비에-----
-----.

제8조(계량기 검침) ① -----

----- 참관하-----

-----.

② -----
----- 제7
조-----

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를 각각 따로 검침한다.

③ (생략)

제9조(업종 조정) 검침담당자가 검침근무 중 조례 별표 3의 업종별 구분표에 의거 이미 책정된 업종의 상위 또는 하위 업종으로 변경사용 되고 있음을 인지하였을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급수업종 변경보고서에 의하여 업종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요금 부과)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 조정할 수 있다.

1. 계량기 지침정지·비정상회전·문자불명·침 탈락·동파로 인한 유리 파손·계량기 교체 등의 계량기에 대하여는 이전 3개월분 사용량의 평균 수량을 당해 월분으로 인정 조정한다. 다만, 전월 사용실적이 누수 등 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계량된 것이 아니

----- 각각-----.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업종 조정) -----

----- 따라 -----

-----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업종 변경보고서에 따라-----
-----.

제10조(요금 부과)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 탈락·동파로-----

----- 계량기-----
----- 해당 -----
-----.
----- 사고로-----
----- 아니-----

하고 판단될 때에는 정상으로 인정되는 이전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을 인정 조정할 수 있다.

- 2. 계량기의 지중매몰·망실·장애물 적치·침수·수용가의 출입문 봉쇄 등 계량기 관리 부주의로 검침이 불가능한 계량기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고 이전 6개월 사용실적 중 최고량을 해당 월분으로 인정 조정한다. 다만, 최고량이 누수 그 밖에 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정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차하위의 것으로 조정할 수 있다.

3. (생략)

④ 조례 제28조 규정에 따른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결과 과다 및 과소 회전으로 판정될 때에는 제3항 규정에 따라 전월 3개월간 평균사용량을 조정량으로 인정한다.

⑤ 사용수량의 인정 조정은 계속하여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검침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라-----

--.

- 2. ----- 장애물-----
-- -----
봉쇄·땅속으로 파문히거나 잃어버릴 경우 -- 계량기-----
----- 정확하게 기록-----

----- . -----
----- 사고로-----

--.

3. (현행과 같음)

④ --- 제28조-----
----- 이상 시험 -----

제3항-----

----- .

⑤ -----

조치하여야 하고 수용가의 의무 불이행으로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검침이 가능할 때까지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정수 처분 한다.

⑥ 계량기 미설치 사용수량 인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용에 있어서는 급수인구 5명까지는 월 기본량 15세제 곱미터로 인정하고 초과할 때에는 1인당 3세제 곱미터씩 가산한다.

2. 그 밖에 업종은 해당 업종에 유사한 인근 동일규모의 사용수량에 30퍼센트 이상을 가산한다. 다만, 시의 사정으로 미설치된 계량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조정자료 관리) ① 시장은 사용량의 조정내역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며, 사용료고지서와 자동납부청구서, 독촉·최고장을 수용가번호 순서대로 작성하여 발행한다.

② 시장은 계량기에 대한 변동사항과 그 밖에 조정자료의 변

- 제39조-----
-----.

⑥ -----
-----.

1. 가정용은-----

-----.

2. -----
----- 같은 규모-----

---. 다만, 남원시-----

-.

제12조(조정자료 관리)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② ----- 계량기-----

경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변경자료를 작성하고 그 자료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생략)

제13조(수납기관) 조례 제31조 규정에 따라 납입고지서로 징수하는 수도사용료는 남원시 금고와 수납대행 금융기관에서 수납한다.

제15조(요금 등의 감면) ① 조례 제36조제2호에 따른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지하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누수로 판단되었을 경우 이전 3개월분 사용량의 평균수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누수부분 복구가 확인된 수용가로 1개월분에 한정하며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별 최초요금 단가를 적용한다.

② 누수요금의 감면적용을 받고

----- 해당하는 경우

-----.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수납기관) --- 제31조---

-----.

제15조(요금 등의 감면) ① -----

----- 누수량은 -----
-----.

----- 누수량은 -----

-----.

② ----- 받으

여야 한다.

② 점검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급수시설 파손 신고가 접수되어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계량기 교체의뢰서를 작성하여 계량기 교체담당부서에 교체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 계량기 교체담당부서는 제2항의 계량기 교체의뢰서에 의거 별지 제3호 서식의 계량기 교체 및 회수대장을 작성·관리하며, 교체의뢰서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교체완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급수시설 현장 상황이 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교체사유 등을 기재하여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전산시스템에 입력·정리한다.

④ (생략)

⑤ 계량기가 동파되었을 때는 신속히 교체하고 급수사용자로부터 계량기 대금을 징수한다.

--.

② -----

--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

③ -----
----- 따라
별지 제3호서식-----

-----.

④ (현행과 같음)

⑤ <삭제>

다만, 동과된 계량기의 유효기
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징수
하지 아니한다.

제17조(부정급수전 처리) ① (생
략)

② 부정급수전에 대해서는 과태
료와 추징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위반사항을 부정급수사용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부정급수전 처리) ① (현
행과 같음)

② 부정급수전은-----
----- 부과와-----
----- 위반자-----
-----.

전라북도 남원시 공고 제 2015 - 619호

공 시 송 달

지방세 기본법 제91조에 의거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급여)압류를 시행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05월 08일

남 원 시 장

- 1. 서 류 의 명 칭 :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급여) 압류 통지서
- 2. 공 고 기 간 : 2015.05.08 ~ 2015.05.22
-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내역과 같음
- 4. 서 류 의 내 용
 -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급여) 압류를 실시하고 통지하였으나 송달 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에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담당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계(063-620-6288) ●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성명	주소	사유	비고
김*환	원주시 흥업면	폐문부재	